

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2-84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2. 10. 9.

제출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징수포상금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징수포상금 지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근거 법령 및 조문을 일부 개정하고,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촉탁제 시행에 따른 징수포상금 지급근거 등을 신설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세입징수포상금 지급대상 명확화(안 제2조제1항)

- 체납업무 직접 종사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체납액을 징수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개정

나.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시 포상금 지급근거 규정 신설(안 제2조제1항제5호)

-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상호간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징수촉탁제 시행

다. 징수포상금 지급대상 기준인 특별공적의 범위 조정(안 제2조제2항)

- 특별한 징수노력이 수반되는 「특별한 공적」 및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용어 정의,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노력이 수반되지 않는 징수사례 포상금 지급 제외

라.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촉탁에 의한 징수포상금 지급 기준 신설(안 제3조제7호)

-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

- 마.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 과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(안 제4조)
 - 지방세 관련 외부전문가 위촉으로 위원회 공정성 제고와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개선
- 바. 기타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운영상 미비점 보완 등
 -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관련 인용법률 수정 및 법률용어 순화 등

3. 조례안 : 따로 붙임

4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없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지방세기본법」 제97조, 제132조
- 2)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 제67조
- 3) 「국세징수법」 제7조의4

나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규제여부 : 해당사항 없음

6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 : 2012. 8. 2. ~ 8. 22.

가)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촉탁제 시행에 따른 포상금 지급근거 등 요청 (교통행정과-40718, 2012. 9.10)

- 안 제2조제1항제5호 신설 :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촉탁제 시행에 따른 포상금 지급근거
- 안 제3조제7호 개정 :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촉탁에 의한 포상금 지급기준 규정

- 2)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(감사담당관-8638, 2012.9.14)

가)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공적심사위원회 통합운영 권고

- 안 제4조제1항 및 제3항 변경 :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공적심사

위원회 통합운영 등

- 3)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 평가(가정복지과-35157, 2012.08.23) : 원안 동의
- 4)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- 5) 신구조문 대비표 1부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지난년도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(기능직·별정직 및 고용직공무원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및 민간인
3.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
5.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

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제1항제1호에 따른 “특별한 공적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으로 제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금(구세 및 구 세외수입을 말한다)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납부 독려, 체납처분,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, 관허사업 제한,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, 고액·상습체납자 명단 공개, 「국세징수법」 제7조의4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,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32조에 따른 고발 또는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한 경우
 2.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게 한 경우
 3. 제1호 및 제2호에 상응하는 사유로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경우
- 제2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, 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2항제2호에 따른 “은닉재산”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·예금·주식, 그 밖에 재산가치가 있는 유·무형의 재산을 말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제외한다.

1. 「지방세기본법」 제97조에 따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
2.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
3. 그 밖에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된 국내에 있는 부동산 등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

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
1. 제2항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 없이 체납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체납세액 고지서를 발송하고 납부기한 내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
2.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의 공매 또는 경매 의뢰결과 배당금을 수령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(배당이의 등 특별한 노력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)
3.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 제67조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

⑥ 제2항제2호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본인의 성명 및 주소를 문서에 적은 후,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.

제3조제1호 및 제2호 중 “전년도”를 각각 “지난년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에는 건당 30만원

제3조제5호 및 제6호가목 중 “「조세범처벌법」 및 「조세범처벌절차법」”을 각각 “「지방세기본법」”으로 한다.

제3조제7호 중 “제2조제1항제4호”를 “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”로 한다.

제3조의2제1항제2호 중 “월지급액”을 “징수월별 지급액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위한 공적심의를 위해 위원회를 둔다.

제4조제2항 중 "4명 이상 6명 이하로"를 "6명으로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소관국장"을 "기획재정국장"으로 하며, "과장급으로 한다"를 "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"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 2명
2.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

제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- ⑧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.

제5조 중 "전년도"를 "지난년도"로 한다.

제7조제2항 단서 중 "「지방세법」 등"을 "「지방세기본법」 등"으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의 제목 중 "전년도"를 "지난년도"로 하고, 체납자란 중 "주민등록번호"를 "생년월일"로 한다.

별지 제2호서식의 부과자(제보자)란 중 "주민등록번호"를 "생년월일"로 한다.

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자란 중 "주민등록번호"를 "생년월일"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포상금 지급대상에 대한 적용례) 제2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체납액 징수분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지급대상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.</p> <p>1. <u>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(기능직·별정직 및 고용직공무원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</u></p> <p>2. (생략)</p> <p>3. <u>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</u></p> <p>4.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설></p> <p>② <u>제1항제1호에 따른 “특별공적”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·관허사업제한·「조세범처벌법」에 따른 고발 또는 그 밖의 관련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,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. 이 경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로서 제4조에 따른 세입징수공</u></p>	<p>제2조(지급대상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<u>지난년도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(기능직·별정직 및 고용직공무원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및 민간인</u>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</u>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u>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</u></p> <p>② <u>제1항제1호에 따른 “특별한 공적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으로 제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.</u></p> <p>1. <u>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금(구세 및 구 세외수입을 말한다)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납부 독려, 체납처분,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, 관허사업 제한,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,</u></p>

현행	개정안
<p data-bbox="204 327 775 421"><u>적심사위원회에서 특별공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</u></p> <p data-bbox="204 891 357 931"><신설></p> <p data-bbox="204 1794 357 1834"><신설></p>	<p data-bbox="868 327 1417 577"><u>고액·상습채납자 명단 공개, 「국세징수법」 제7조의4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,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32조에 따른 고발 또는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한 경우</u></p> <p data-bbox="839 595 1417 689">2. <u>채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채납액을 징수하게 한 경우</u></p> <p data-bbox="839 707 1417 855">3. <u>제1호 및 제2호에 상응하는 사유로 채납액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경우</u></p> <p data-bbox="839 887 1417 1205">③ <u>제2항제2호에 따른 “은닉재산”이란 채납자가 은닉한 현금·예금·주식, 그 밖에 재산가치가 있는 유·무형의 재산을 말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제외한다.</u></p> <p data-bbox="839 1223 1417 1370">1. 「지방세기본법」 제97조에 따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</p> <p data-bbox="839 1388 1417 1536">2.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채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</p> <p data-bbox="839 1554 1417 1760">3. 그 밖에 채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된 국내에 있는 부동산 등 채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</p> <p data-bbox="839 1792 1417 1939">④ <u>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</u></p> <p data-bbox="839 1957 1417 1998">1. <u>제2항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 없이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③ (생략)</p> <p><신설></p> <p>제3조(지급기준)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전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. 전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으로 하고,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	<p>체납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체납세액 고지서를 발송하고 납부기한 내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</p> <p>2.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의 공매 또는 경매 의뢰결과 배당금을 수령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(배당이의 등 특별한 노력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)</p> <p>3.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 제67조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</p> <p>⑤ (현행 제3항과 같음)</p> <p>⑥ 제2항제2호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본인의 성명 및 주소를 문서에 적은 후,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.</p> <p>제3조(지급기준) 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지난년도</u> ----- ----- ----- 2. <u>지난년도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현행	개정안
<p>3. (생략)</p> <p>4.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. 다만, 「공무원제안규정」 등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.</p> <p>5. 고의 또는 과실로 지방세를 부당하게 포탈, 공제 또는 환급받은 자를 적발하여 「조세범처벌법」 및 「조세범처벌절차법」에 따라 통고처분하거나 고발하고 해당 지방세를 추징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</p> <p>6.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·공제받은 세액(이하 “탈루세액 등”이라 한다)의 추징에 관하여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. 이 경우 “중요한 자료”란 「국세기본법」 제84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에 준하는 자료를 말한다.</p> <p>가. 「조세범처벌법」 및 「조세범처벌절차법」에 따라 통고처분하거나 고발하고 해당 지방세를 추징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</p> <p>나. (생략)</p>	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에는 건당 30만원</p> <p>5. ----- ----- ----- 「지방세기본법」 ----- ----- -----</p> <p>6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가. 「지방세기본법」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나.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7. 제2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분의 10</p>	<p>7.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제3조의2(지급한도) ①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4조(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) ① 세정발전과 세입증대 공적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“구청장”이라 한다) 소속하에 각 국별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○○국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4명 이상 6명 이하로 구성한다.</p> <p>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국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으로 한다.</p> <p><신설></p> <p><신설></p>	<p>제3조의2(지급한도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 징수월별 지급액 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조(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)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위한 공적심의를 위해 위원회를 둔다.</p> <p>② ----- ----- 6명으로 -----.</p> <p>③ -----기획재정국장 -----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</p> <p>1.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 2명</p> <p>2.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</p>

현행	개정안
<p><신설></p> <p>④ (생략)</p> <p>⑤ ~ ⑥ (생략)</p> <p><신설></p> <p>제5조(대장비치) 세입금부과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<u>전년도</u> 체납액 징수대장(포상금지급대상)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숨은 세원 발굴 과징대장(포상금지급대상)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, 정리하여야 한다.</p> <p>제7조(지급) ① (생략)</p> <p>②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,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. 다만, 제3조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「지방세법」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	<p>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</p> <p>⑤ (현행 제4항과 같음)</p> <p>⑥ ~ ⑦ (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)</p> <p>⑧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.</p> <p>제5조(대장비치) ----- ----- <u>지난년도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7조(지급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「지방세기본법」 등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
[별지 제1호 서식] (개정 '95. 9. 26, 2012. 3.22)

지난년도 체납액 징수대장(포상금지급대상)

(단위 : 원)

징수월일	징수자		체납자			징수내역				징수확인 (계장)	특별징수 공적 (사유)	포상금 청구(지 급)액	지급일
	직급	성명	주소	성명	생년월일	년도기분	과세번호	세목	징수액				

※ 본 대장은 가능한 한 직원 개인별로 작성

신문용지 54g/m²
268mm×190mm

[별지 제3호 서식] (개정 '95. 9. 26)

포 상 금 지 급 신 청 서

(단위 : 원)

신 청 자			징 수(세 원 발 굴) 액				청구액	거래은행 계좌번호	비 고
소 속(주 소)	성 명	생년월일	건 수	합 계	본 세	가산금			

※ 1.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심사결정서를 첨부하여 청구
 2. 비고란에 포상금지급 적용 기준조항등을 기록

신문용지 54g/m2
268mm×190mm